



농 립 부

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(축산관련)

제목	종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계 부서
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	〈신 규〉	농 가 별로 농지이용정보,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,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·관리하는 제도로써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	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(2008년 부터시행)	소득지원팀 (02-500-2116)
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	〈신 규〉	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	한미FTA 보완대책 (2008년 부터시행)	축산경영과 (02-500-1995)
동물등록제, 동물판매업·동물장묘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	<p>동물학대 : 벌금20만원이하</p> <p>유기동물 보호 조치기간 : 30일</p> <p>〈신 규〉</p>	<p>동물학대 : 벌금500만원이하</p> <p>유기동물보호기간 단축 : 30일에서 10일로 단축(동물 유기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)</p> <p>동물등록제 실시(대상 : 개) :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정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장·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음(미등록시 3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)</p> <p>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는 소유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(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)</p> <p>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, 맹견은 입마개 등을 하여야 하고, 배설물이 생긴 때는 즉시 수거(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)</p> <p>동물판매업, 동물장묘업의 등록 - 동물판매업, 동물장묘업 미등록 등(100만원이하 벌금)</p> <p>○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: 정부기관 등 동물 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(미설치시 50만원 과태료 부과)</p> <p>○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명예감시관 임명</p>	동물보호법개정안 (2008. 1. 27. 시행)	가축방역과 (02-500-1933)

쇠고기 이력추적제 분사업 2008년 12 월부터 시행	참여 신청 브랜 드·지자체를 대상 으로 시범사업 - 출생 신고, 이동 신고, 귀표부착, 개 체식별번호 표시 등 : 자율적 시행 - 위반 시 : 법적 제재근란	전 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분사업 시행 - 출생 신고, 이동 신고, 귀표부착,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: 법적으로 의무화 - 위반 시 : 법적 제재(벌금, 과태료부과)	소 및 쇠고 기 이력추 적에 관한 법률 (2008. 12. 시행)	축 산 물 위생과 (0 2 - 5 0 0 - 1925)
시·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 전용허가 권한 확대	계획관리지역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20ha까지 시·도 지사에 위임	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50ha까지 시· 도지사에 위임	농지법 시행령 (2008상반 기 시행 예 정)	농지과 (0 2 - 5 0 0 - 1670)
법정 가축전염병 재 분류 및 명칭 변경	법 정 가축전염병 을 제1종과 제2종 으로 구분 예 지 콜 레 라 등 인체 질병과 유사 한 병명 사용	법 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 - 제2종 가축전염병중 피해가 적어 정부 방역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을 제3종으로 변경하여 농가 자율방역 유도 - 소 유행열, 소아까바네, 닭마이코플즈마병, 저병 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및 부저병(5종) * 시행규칙내 제2종 가축전염병중 13종을 제3종으 로 재분류 예정 예 지 콜 레 라 는 “돼지열병”, 아프리카돼지콜레라는 “아프리카돼지열병”, 부루세리병은 “브루셀라병”으로 변경	가축전염병 예 방 법 (2008. 2. 4. 시행)	가 축 방 역과 (0 2 - 5 0 0 - 1940)

농업경영체등록제 실시

농림부 농업정책국 소득지원팀(☎ 02-500-2116)

□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
보,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,
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
도로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보완
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2008년도부터
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-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
여 농림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, 등록된

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
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
으로 활용할 예정이다.

- 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
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08
년부터 시행해 나갈 것이다.

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

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(☎ 02-500-1995)

- 2008년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

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.

•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(급이·급수, 소독·환기 시설, 온·습도 조절장치 등) 자금을 지원한다.

- 2008년도 사업비 : 128,660백만원(보조 25,732, 융자 77,196, 자담 25,732)

- 지원조건 : 보조 20%, 융자 60%, 자부담 20%

- 2008년도 사업량 : 총 515개소(한우 200, 양돈 150, 양계 75, 오리 10, 낙농 80)

- 개소당 지원한도액 : 한(육)우 200백만원, 양돈 900, 산란계 1,400, 육계 700, 오리 700, 낙농 200

□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2017년까지 5,150개소를 지원하게 되며,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동물등록제, 동물판매업·동물장묘업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

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☎ 02-500-1933

□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대응하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, 2008. 1.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•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(대상 : 개) 시행근거를 마련하고, 동물판매업·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.

* '반려동물(companion animal)' 은 1983.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「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」에서 '애완동물'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,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

□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•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였다.

-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.

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토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다.


•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장·군수가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,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 시키도록 하였다.

•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,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, 시·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,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반려동물

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다.

-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를 공급하고, 상해를 방지하여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의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,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.
-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판매업·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실시하고,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판매업자·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.
-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시관과 명예 감시관 위촉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의 동물학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.

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하였다.

-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중 피해가 적어 정부 방역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을 제3종으로 변경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,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*대상 가축전염병 : 소유행열, 소아까바네, 닭마이코플라즈마병,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, 부저병(5종)
-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내 제2종 가축전염병(18종)중 13종을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.
- *대상 가축전염병 : 소전염성비기관염, 소류코시스, 소렙토스피라, 돼지전염성 위장염, 돼지단독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, 돼지유행성설사, 돼지위축성비염, 닭뇌척수염, 닭전염성후두기관염, 닭전염성기관지염, 마렉병, 닭전염성F낭병
- 인체 질병과 유사한 병명으로 인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질병 명칭 및 인체 질병명과 서로 달라 통일이 필요한 가축전염병 명칭을 변경하였다.
- 인체 질병과 유사한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“돼지열병” 및 “아프리카돼지열병”으로 각각 변경했으며, 인체 질병과 질병명이 서로 다른 소부루세라병을 “소브루셀라병”으로 질병 명칭을 통일시켰다. 

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 변경

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(☎ 02-500-1940)

□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과 제2종에서 제